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3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주철현·백승아·민형배

위성곤 • 박용갑 • 천하람

문금주 • 허성무 • 정진욱

고민정 • 이재강 • 박해철

이해식 • 박희승 • 황운하

조인철 • 이건태 의원

(179]

제안이유

경찰 수사 중 유명을 달리한 배우 이선균씨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의수사와 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수사·공보 관련 인권 침해 방지 의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등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통일된 법률의 부재로 사건관계인은 수사기관에게 기본권 보장·침해 방지를 요구하 기 어렵고, 형사사건 수사 자체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 영향을 끼침. 이에 각 수사기관별로 산재된 형사사건 수사·공보 과정에서의 인 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법률로 통합하여,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 생활의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벌칙으로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 고자 함.

이는 수사·공보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형사사건 수사의 적법절차원칙 준수에 이바지하고, 형사사건수사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적정한 법률 적용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2조).
- 다. 수사는 그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합리적 근거 없는 별개 사건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을 금지하고, 수 사담당자의 가혹행위, 진술 강요 및 진술을 얻기 위한 부당한 이익 이나 편의 등의 제공 등을 금지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수사·공보 담당자가 수사·공보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0조 및 제46조)
- 바. 불기소처분한 형사사건 등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하되, 실명 공개를 제한하고 재판에 의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하도록 함(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 사. 공개가 제한되는 형사사건의 정보라도 오보나 추측성 보도 등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하여 공보담당자등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등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 47조 및 제56조).
- 아.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및 장소 등 수사를 위한 출석 정보에 대한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개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2조).
- 자. 수사·공보의 담당자를 지휘 또는 보조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사 ·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의무를 준용함(안 제57

조).

- 차.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각 수사 기관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보호관이 법 위반행위 등을 점검하 도록 하여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징계 등 조치를 의무화함(안 제 58조 및 제59조).
- 카. 수사·공보 담당자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공보담당자 등을 변경하도록 함(안 제60조).
- 타. 수사·공보 중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거나 유출된 경우 국가는 그 공개나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 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공개,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2조).
- 파. 형사사건을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됨을 전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판결확정 전 형사사건을 다룰 때에는 해당 사건이 판결확정 전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는 외에 그 관점과 분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공보와 사건관계인의 입장이 균형을 갖춤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3조).
- 하. 수사·공보 과정에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을 폭행·협박 한 경우,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을 받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편

의 등을 제공한 경우, 공개·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를 공개 또는 유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법률 제 호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① 수사와 공보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한 적정한 법률 적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권침 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수사와 공보의 담당자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의자·피고인·피해자·참고인 등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사건관계인의 권리는 보호되며, 사건관계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장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고, 수사와 공보로 인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수사와 공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수사 및 공보의 담당자 등에게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수사 전 조사와 그 공보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사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통칙

- 제6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수사는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 의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강제수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사권 남용 금지) ①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담당자"라 한다)는 수사의 개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② 수사담당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사담당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하여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사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을 반복적으로 소환하거나, 사건관계인의 가족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가혹행위 금지)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진술 강요 등 금지) ①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에게 범죄혐의 에 대한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사담당자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사건관계인에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사담당자는 진술을 받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① 수사담당자는 수사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수사담당자는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 밀을 보호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③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권리의 고지)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에게 수사과정에 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사과정 기록) ① 수사담당자는 수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수사담당자는 사건관계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과 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녹화 및 보존 등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체포・구속

- 제13조(체포·구속의 제한)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체포·구속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 니 된다.
- 제14조(영장의 재청구) 검사는 체포·구속 영장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기각사유에 따라 보완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야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 제15조(체포·구속 시 고지) 수사담당자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1. 피의사실의 요지
 - 2. 체포 구속의 이유
 - 3.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 4. 진술을 거부할 권리
- 제16조(체포·구속 시 준수사항) ① 수사담당자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피의자의 인적사항
 - 2. 피의자의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 ② 수사담당자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는 피의자와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17조(체포·구속 사실 통지) ① 수사담당자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변호인(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 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사건명
 - 2. 체포・구속의 일시 및 장소
 - 3.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② 제1항의 통지는 체포·구속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 제18조(구속 유지·연장의 제한) ① 수사담당자는 구속 후 사정변경에 따라 구속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속취소의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수사담당자는 계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면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며, 구속기간 중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 속히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압수 · 수색 등

- 제19조(압수·수색의 제한) ① 수사담당자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② 수사담당자는 압수 대상이 아닌 물건이 함께 압수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압수·수색 시 참여의 보장) ① 수사담당자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우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사담당자가 압수·수색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설명하고, 그 대상자, 변호인 및 기타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1조(압수·수색 시 준수사항) 수사담당자가 압수·수색하는 때에는 피의자와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2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① 수사담당자가 컴퓨터용디스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수색의 대상자나 참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압수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수사담당자는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가 함께 압수된 경우지체없이 삭제 폐기하여야 한다.
- 제23조(신체의 수색·검증) ① 수사담당자가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 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

- 록 장소 · 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 ② 신체에 대하여 수색·검증할 때에는 같은 성별의 수사담당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제24조(압수물의 부당사용 금지) 수사담당자는 압수한 물건 등을 적절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수사와 공소유지 등 정당한 직무 수행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절 피의자 조사

- 제25조(임의동행) ① 수사담당자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② 수사담당자는 임의동행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확인을 마치거나임의동행한 대상자가 퇴거의사를 밝힌 경우 즉시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출석요구) ① 수사담당자는 수사의 상황과 진행 경과에 비추어 출석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우편, 전자우편 및 전화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조사방법의 선택 가능성

- 2.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출 석의 일시·장소 및 출석요구의 방법
- ② 수사담당자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 제27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수사담당자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28조(변호인과의 접견·교통) 수사담당자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의 접견·교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29조(변호인의 참여) ① 수사담당자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변호인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수 있다.
- 제30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수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 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제31조(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 수사담당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심야조사 제한) ① 수사담당자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시간대의 조사(이하 이조에서 "심야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수사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3. 피의자가 요청한 경우
- 제33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수사담당자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대기, 휴식, 식사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이 조에서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수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대기, 식사, 휴식 및 조서의 열람을 제외한 실제로 조사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수사담당자는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34조(휴식 부여 등) ① 수사담당자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중에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수사담당자는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휴식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수사담당자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피해자 조사 등

- 제35조(피해자의 진술 등 보장) 수사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 상황, 처벌 희망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36조(피해자 정보 제공) ① 수사담당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2. 정보 제공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7조(전용조사실)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범행 당시의 충격이나 불안 감, 수치심 등으로 공개된 장소에서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조사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38조(피해자 조사 시 준수사항) ① 수사담당자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인격, 사생활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수사담당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피의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 제39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수사담당자는 피해자, 고소인·고발인 등 참고인 및 그 가족(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피의 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2. 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출석 · 귀가 시 동행
 - 3. 임시숙소 제공
 - 4. 주거지 순찰 강화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40조(피해자 등의 조사에 대한 준용) 제25조, 제26조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은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에 준용한다.

제6절 조사 대상자에 따른 특례

- 제41조(장애인의 특례) ① 수사담당자가 장애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수사담당자가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 제42조(외국인의 특례) ① 수사담당자가 외국인을 조사하는 때에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여 주어야 한다.
 - ② 수사담당자가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1.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다 는 사실
 - 2.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요청한 경우수사담당자는 지체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보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통칙

- 제43조(형사사건의 공개 제한) 형사사건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기관의 공보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 제44조(공보의 원칙) ① 수사기관의 형사사건 공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한다.
 - ② 형사사건의 공보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의자의 무

죄추정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5조(공보담당자) ① 수사관서의 장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공보 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형사사건의 공보는 공보담당자가 실시한다. 다만, 수사관서의 장이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형사사건을 공보하거나 공보담당자 아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공보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보담당자 지정, 제2항에 따른 공보담당자 아닌 사람의 형사사건 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개인정보 등 유출 금지) 제45조제2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공보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공보담당자등"이라 한다)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공보절차

제47조(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① 불기소처분한 사건 등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이하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보할 수 있다.
- 1.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이나 동종 범죄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명백하여 범인의 검거를 위한 정보 제공 등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 등을 국민에게 즉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 하여 신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1. 피의자의 신상
- 2. 발생한 범죄피해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위협의 내용
- 3. 범죄피해의 확산방지 및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조치의 내용
- 4. 혐의사실, 범행수단 및 증거물
- ④ 공개 사유별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의 시기 등 제2항에 따른 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공소제기 후 형사사건) ① 수사기관은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 (이하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보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보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1. 피고인의 신상
 - 2. 죄명과 공소사실의 요지
 - 3. 공소제기의 일시 및 방식
 - 4. 수사경위 및 수사상황
 - ③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의 시기 등 제1항에 따른 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공보의 방식) ① 형사사건의 공보는 공보담당자등이 서면 공보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공보담당자등은 공보자료 의 범위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사건관계인의 인 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속 수사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 공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형사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50조(공보 시 유의사항) ① 공보담당자등은 공보하는 내용이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공보담당자등은 허용된 공보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 하여 줄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 제51조(실명 공개의 제한) ① 공보담당자등은 형사사건을 공보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실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의 실명이 이미 공개된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잘못된 보도의 방지와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그 공개 범위 등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사건관계인 권리 보호

- 제52조(출석 정보 공개 금지) ① 수사담당자와 공보담당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장소, 귀가 시간 등 사건 관계인의 출석에 관한 정보(이하 "출석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3조(초상권 등의 보호) ① 수사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촬영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수사담당자와 공보담당자등은 사건관계인에게 언론이나 제3자와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4조(피의자의 초상 공개) 피의자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제55조(언론과의 접촉 제한) 공보담당자가 아닌 수사담당자는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오보 등에 대한 대응) ① 공보담당자등은 소관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언론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수사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보담당자등은 언론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 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공보담당자등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담은 언론보도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7조(수사 및 공보 관계자에의 준용) 제2장 및 제3장은 수사담당자

또는 공보담당자등을 지휘·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하 "수사· 공보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 제58조(인권보호관) ①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 ②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수사 및 공소에서 인권 침해 여부 점검
 - 2. 수사담당자 및 공보담당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인권보호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제59조(위반행위 점검) ① 인권보호관은 정기적으로 수사담당자, 공보 담당자등 및 수사·공보관계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인권보호관은 이 법에 따라 공개·유출이 금지되는 정보가 공개 또는 유출된 경우에는 수사담당자 및 공보담당자등의 위반행위 여 부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사담당자 및 공보담당자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0조(담당자의 변경)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담당자 및 공보담당자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1. 수사담당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수사담당자 및 공보담당자등이 제10조제3항, 제46조, 제52조 및 제53조를 위반한 경우
- 3. 그 밖에 수사 및 공보에서 수사담당자 및 공보담당자등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은 경우
- 제61조(교육의 실시)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 보장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2조(국가배상의 특례) 국가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공개·유출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수사 및 공보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3조(형사사건 보도 등에 관한 특칙) ① 형사사건의 보도와 정보통 신망을 이용한 유통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됨을 전제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형사사건을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하는 경우 타인(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판결확정 전 형사사건의 보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은 해당 사건이 판결확정 전의 형사사건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관점과 분량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공보와 사건관계인의 입장 등을 균형있게 다룸으로써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 제64조(가혹행위 등) ① 수사담당자 또는 이를 지휘·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8조를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 게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제65조(진술 강요 등) ① 수사담당자 또는 이를 지휘·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수사담당자 또는 이를 지휘·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술을 받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66조(개인정보 유출 등) 수사담당자, 공보담당자등 또는 수사·공보 관계자가 이 법에 따라 공개·유출이 금지되는 정보를 공개·유출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